

대구서부지사 중대재해 사례 (2018.05.15.)

본 사례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서 동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작·배포하오니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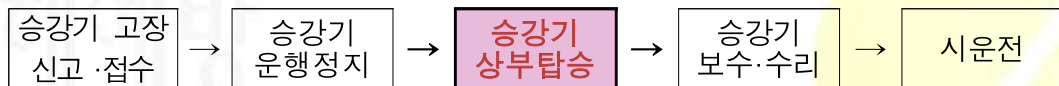
승강기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끼임

< 재해개요 >

APT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인 0000 소속 재해자가 고장난 2호 승강기를 수리하기 위해 1호 승강기 운반구 상부에서 2호 승강기 운반구 상부로 진입하려다가 1호 승강기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.

1. 재해발생과정 및 재해발생상황

○ 재해발생과정



- 2층에 승강기 탑승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(상가가 위치함) 승강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2호 승강기 운반구 상부로 건너가는 공정임.

○ 재해발생상황

- 승강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1호 승강기 운반구 상부에서 2호 승강기 운반구 상부로 진입하려다가 1호 승강기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끼임.



그림-1. 재해가 발생된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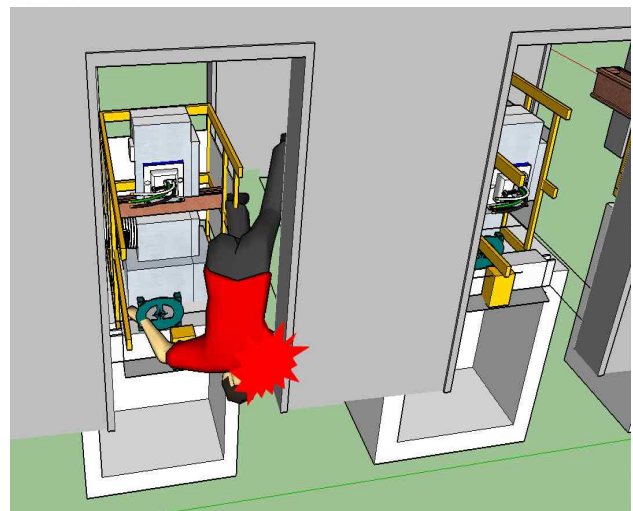


그림-2. 재해발생 상황도

2. 재해발생원인

○ 정비·수리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미실시

- 승강기 등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정지하지 않고 수리를 함

○ 보호구(안전모) 미착용

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
3. 재발방지 대책

○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

- 승강기 등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.

※ 승강기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승강기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실 제어반 등에 조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

○ 보호구(안전모) 착용

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.